

# 납품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의 신규 지정 결과

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,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신규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
□ 심의 개최 : 2024. 3. 22.(금) 14:00~16:00

□ 심의 결과 : 총 4개 기관 신규 지정

지정 기관명	비고
중소기업중앙회	
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	
(사)중소기업융합중앙회	
(사)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	

□ 지정기간 : 지정일로부터 2년 (2024. 3. 29 ~ 2026. 3. 28)

2024년 3월 29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